#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68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0.

발 의 자: 송재호·김민철·박완주

김홍걸 · 강득구 · 홍성국

유재갑 • 민형배 • 이규민

한정애 · 맹성규 · 양정숙

김영호 · 김회재 · 이성만

오영환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.

그런데 법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시행 후 3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2 021년 9월 14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데,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,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진상규 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회의 활동기간) ① 위원회는 2021년 9월 14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.

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5조의2(위원회의 활동기간) ①
	위원회는 2021년 9월 14일까지
	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.
	② 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
	기간까지 활동을 완료하기 어
	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
	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
	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
	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
	<u>할 수 있다.</u>
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	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
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	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 후	<u>&lt;삭 제&gt;</u>
3년간 효력을 가진다.	